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도사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
- 기위임된 사무중 법개정으로 시장·군수, 소방서장 권한사항으로 된 항목 폐지

□ 주요골자

- 조례조문개정
- 보건과 소관
- 환경관리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내수면어업과 소관
- 산림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치수과 소관
- 방호과 소관
- 축산과 소관

□ 첨부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소관별 자치법규 정비 요약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발췌각 1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방서장”를 “군수·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조중 “및 소방서장”을 삭제하고 “같다”뒤에 “다만 별표의 방호과 소관 사무 제1호내지 제48호의 위임은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중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환경보호담당관실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환경관리과 및 환경지도과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
환경지도과	1	·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

(별표)중 위생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내수면어업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일련번호 제20호중 다목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해제”를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제24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조수보호구의 설정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나.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의 설정 또는 해제고시

다. 조수보호구역 안에서의 이용개발 행위

라. 손실보상

25. 조수보호원 자격 및 임명, 해임

가. 조수보호원의 임명

나. 명예조수보호원 위촉

다. 조수보호원증 및 명예조수 보호원증 발급과 대장 비치

라.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보호원 해임 및 해촉

(별표)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3호 기계식주차장 인
정사무의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를 “주차장법 제6조”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을 “동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도시계획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내지 제15호를 제8호내지 제16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계획과	7	•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협약에 관한 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 조의9 제1항 제29조

(별표) 치수과 소관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과	78	• 하천편입용지보상 (내수 및 소유권이전)	• 하천법 제74조

(별표) “소방과소관”을 “방호과 소관”으로 하고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축산과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분야별	연계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1	○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전염병예방법제8조
	2	○ 전염병에 관한 경제적 건강진단 명령	동법 제9조
	3	○ 제1종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동법 제23조
	4	○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동법 제39조
	5	○ 제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42조
	6	○ 결핵예방 집중의 유예선고	결핵예방법 제17조
	7	○ 예방집중 증명서의 교부	동법 제18조
	8	○ 의원등 개설신고(비영리의료기관 제외)	의료법 제30조제3항
	9	○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동법 제33조
	10	○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필요한 상황 보고 명령 및 시설등의 검사	동법 제49조
	11	○ 의료기관시설 사용제한, 금지, 시정명령	동법 제50조
	12	○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이전,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3	○ 동신고필증의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14	○ 조산소의 지도의사 신고 및 변경신고	동규칙 제25조
	15	○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명령	동법 제51조
	16	○ 동업자의 자격정지	동법시행령제21조및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17	○ 동업자의 등록대장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동법시행령제21조 및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7조
	18	○ 동업자의 자격증 재교부	"
	19	○ 동 자격증의 반환, 회수, 환부	"
	20	○ 동업자의 시술소의 개설 및 변경신고	"
	21	○ 동 시술소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22	○ 동 시술소의 실적보고	"
	23	○ 동 자격증의 갱신신청	"
	24	○ 의료촉탁	"
	25	○ 한약업사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법 제35조
	26	○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등 판매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동법 제69조
	27	○ 약국제재의 제조품목 신고	동법 제33조
	28	○ 의약품등의 검인	보사부훈령 제261호
	29	○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비치 및 영업허가증 교부	동규칙 제22조
	30	○ 동영업소의 이전허가	동규칙 제24조
	31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32	○ 의약품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증 갱신	동규칙 제50조
	33	○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동규칙 제3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34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동규칙 제45조
	35	○ 의료기사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수리	의료기사법 제10조
	36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도매업자 관리자에 대한 다음사항) 가.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사항 변경 나. 지정서의 교부 다. 업무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라.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향정신성의약품제8조 동법제9조, 동법시행 규칙제9조 동규칙 제23조 동법 제35조
	37	○ 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대상자 와 판매승인	동법 제18조
	38	○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동법제27조, 동시행규 칙제27조
	39	○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동법 제28조
	40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유	동법 제31조
	41	○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검사 및 수거	동법 제33조
	42	○ 향정신성의약품 폐기명령	동법 제34조
	43	○ 소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신고 수리	동법 제28조

분야별	인원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과	44	○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	동법 제36조 제2항
	45	○ 마약취급자(소매업자, 관리자)에 대한 다음사항	
		가.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법 제7조
		나. 면허증교부와 등록	동법 제8조
		다. 등록사항 변경	동법 제11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6조
		라. 면허증 재교부	상 동
		마. 마약취급자의 등록말소	동법 제11조 제1항
		바. 업무의 폐지신고	동법 제10조 제2항
		사.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때 의 신고처리	동법 제10조 제3항
		아. 업무보고 명령	동법 제52조
자. 면허취소와 업무정지		동법 제53조	
46	○ 사고마약의 보고처리	동법 제15조	
47	○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리	동법 제16조	
48	○ 공사립병원을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 대용지정하는 권한	전염병예방법제25조	
49	○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7조	
50	○ 의약품판매업(도매상)폐업신고	약사법제3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54조 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보건과	51	○ 안마시술소의 행정처분	의료법제30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규칙제 9조 및 제12조
	52	○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	안마사에 관한규칙제8조
	53	○ 소독업허가 및 변경허가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
	54	○ 소독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수리	동법 제40조의4
	55	○ 소독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동법 제40조의8
	56	○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행정처분	소독관리업무처리규정 (보사부훈령제6조)
	57	○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약사법 제35조
	58	○ 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동법 제69조
	59	○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동법시행규칙 제50 조 제1항
	60	○ 소독대행업소 허가	전염병예방법 제40 조의3 및 동시행규 칙 제20조의2
	61	○ 예방접종 공고	결핵예방법 제15조
	62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지정	의료법시행규칙제27 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제5조 및 제16조

분야별 면허권한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생과	1	○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83. 7이후 교육기관 이수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2	○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83.7이후 교육기관 이수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	공중위생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3	○ 식품등으로 기인된 사체의 해부	식품위생법 제68조
	4	○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 시도가 다른 경우의 면허취소와 업무정지는 최초교부한 도에서 관장함)	공중위생법제23조 제2항
	5	○ 병·통조림 제조업 관리중 가.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나. 품목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다. 휴업·재개업·폐업 및 변경신고 라. 조건부 영업허가 마. 영업의 승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 제22조 제3항 동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3항

분야별	인건비 연계	사 무 명	근거 법령
위생과		바. 품질관리 및 보고 사. 시정명령 아. 폐기처분등 자. 시설의 개수명령등 차. 허가의 취소등 카. 품목제조허가의 취소등 타. 폐쇄조치등 파. 청문 하. 과징금 처분 거. 과태료 부과징수 6 ○ 조리사 면허취소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는 최초교부한 도에서 면허취소함) 7 ○ 조리사면허증의 반납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면허취소자는 교부한 시도에 면허증 반납)	동법 제29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78조 동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제48조

분야별 구분	순번	사 무 명	근거 법령
내수면 어업과	1	○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취소	어선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2	○ 어선 총톤수 측정 및 개측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한함)	동법 제13조
	3	○ 조업제한의 결정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한함)	동법시행령제13조
	4	○ 호출부호 지정	동법시행규칙제11조
	5	○ 어선원부의 등본, 사본과 열람등	동법시행규칙제23조
	6	○ 어선건조, 개조의 발주허가	동법 제5조
	7	○ 선박 국적증서등의 검인	어선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27조
	8	○ 지구별조합의 감독상 필요자료 요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 행규칙제22조
	9	○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수산시설관리규정 제5조
	9	○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및 주요시설의 변경승인	수산시설관리규정 제7조
	11	○ 수산 동·식물 채포금지 해제허가(양식 어업, 제1종 공동어업용 종묘)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1항제1호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법령
내수면 어업과	12	○ 어선현장 확인업무	어선법 제8조
	13	○ 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
	14	○ 임시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15	○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29조의2
	16	○ 선박국적고시등의 무효고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호과	1	화재의 예방조치명령권	소방법 제4조
	2	소방대상물 검사권	동법 제5조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사권	소방법 제3조 소방법 제81조내지 제85조
	4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권	동법 제3조, 제6조
	5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	동법 제3조, 제8조
	6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동법 제3조, 제9조
	7	공동방화관리 대상지정 및 협의 사항신고	동법 제3조, 제10조
	8	소방관계자의 교육미필자에 대한 해임명령 및 해임권고권	동법 제3조, 제105조
	9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승인권	동법 제3조, 제15조
	10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	동법 제3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2조
	11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동법 제3조, 제20조
	12	예방규정의 인가권	동법 제3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 호 과	13	위험물제조소등의 감독권	동법 제3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14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취소, 사용정지명령권	동법 제3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
	15	무허가위험물시설등에 대한 조치 명령권	소방법 제3조, 제28조
	16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	소방법 제3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2조
	17	자체소방조직의 지도 감독권	소방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3조
	18	소방시설설치 유지에 관한 명령권	소방법 제3조, 제30조
	19	소방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 관 한 권한	소방법 제3조, 제31조
	20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완 공검사권	소방법 제3조, 제62조
	21	화재위험경보발령권	소방법 제3조, 제67조
	22	화재위험경보발령시 불의 사용제 한권	소방법 제3조, 제67조 제2항
	23	화기취급의 금지, 제한권	소방법 제3조, 제68조
	24	방화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상 조 치명령권	소방법 제3조, 제69조 제2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호과	25	화재경계지구의 설정권	동법제3조, 제75조
	26	방화경계구역 출입금지 제한권	동법제3조, 동법시 행규칙 제71조
	27	소방응원요청, 지휘권	동법제3조, 제76조
	28	소화종사명령권	동법제3조, 제77조
	29	소방대상물등에 대한 강제처분권	동법제3조, 제78조
	30	화재로 인한 피난명령권	동법제3조, 제79조
	31	화재현장의 급수유지의 긴급조치권	동법제3조, 제80조
	32	소방용수시설의 지정권	동법제3조, 제43조
	33	화재원인과 피해재산 조사권	동법제3조, 제81조
	34	강제조사권	동법제3조, 제82조
	35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자에 대한 조치권	동법제3조, 제83조
	36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 협력	동법제3조, 제85조
	37	청원소방원의 배치결정권	동법제3조, 제92조 동법시행령 제44조
	38	청원소방원 지도, 감독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호과	39	청원소방원 직무교육 실시권	동법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40	청원소방원의 운영관리	동법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
	41	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권	동법제3조, 제93조
	42	구급대원의 임명권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9조
	43	구조대의 편성운영권	동법제3조, 제94조
	44	구조대원의 임명권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45	구조활동의 지원요청권	동법제3조, 제93조
	46	청문권	동법제3조, 제106조
	47	과태료부과 징수권	동법제3조,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48	소방시설 자체 점검보고	동법제3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1	종계업 등록 및 취소	축산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2	부화업 허가 및 취소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7항
	3	종계업 및 부화업의 감독	동법 제15조
	4	대부종축의 전대관리 위탁의 승 인	동법시행규칙 제14 조 제2항
	5	가금등의 도살처리장 시설의 검 사(단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것 은 제외)	가금등의 의뢰검사 규칙 제3조 제2항
	6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행정처분	약사법 제69조 동물 용의약품등 취급규 칙 제31조
	7	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의사법 제17조
	8	동 휴업 및 폐업신고	동법 제18조
	9	수의사 검진 검안부의 검사	동법 제32조
	10	공수의 지도 감독	동법 제21조
	11	종모우의 종부정지처분과 지정 및 취소	축산법시행규칙제8조 제1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12	중부 대부기간 연장 및 대부종축 의 반납명령	동규칙 제13조
	13	가축의 격리와 이동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14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또는 제한명령	동법 제18조
	15	가축방역관 임명	동법 제3조
	16	가축의 사체소각 또는 매몰 발굴 의 중지	동법 제15조
	17	전염병 이환축의 도살처분 명령	동법 제10조
	18	광견병 이환축의 조치	동법 제102조 제3항
	19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의 실 시	동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20	초지조성의 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제1 항 제2호
	21	축산업의 등록	축산법 제13조의2 제1항
22	축산업 영업의 양도.임대 등록사 항 변경 및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동법 제13조의2 제5 항 및 제6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23	종축업의 등록	동법 제13조 제1항
	24	종축업 영업의 양도.임대 등록사항변경 및 폐업.휴업.재개신고	동법 제13조 제3항 및 제5항
	25	<p>축산업자 및 종축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사육가축 감축명령</p> <p>나. 초과사육 부과금 납부명령</p> <p>다. 감축명령 미이행에 따른 등록취소</p> <p>라. 지도 감독</p>	동법 제14조 및 제15조
	26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수의사법 제21조
	27	부정축산물 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6조
	28	사료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사료관리법 제10조
	29	사료검사 신청	사료관리법 제15조
	30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0조
	31	동물용 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동규칙 제1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32	관리약사 변경	동규칙 제10조 3항
	33	동물약사 감시원 임명	동규칙 제25조 전항
	34	동물용 의약품등의 허가등록사항 보고	동규칙 제37조
	35	행정처분	동규칙 제31조
	36	축사내외부 소독실시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6조
	37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비 명령	동법 제7조
	38	살처분 보상금 지급	동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령 제3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조문개정)

개정사유

기존에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소방법상 소방서장의 권한
으로 명시된 본연의 업무이므로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키 위함.

주요골자

- 소방서장 명칭 삭제 및 제2조중 단서조항 추가
- 중복부칙조항 삭제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일부를 <u>소속 시장, 군수,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2 조(권한의 위임사항)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u>시장, 군수,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u></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군수, 출장소장에게</u></p> <p>제 2 조)권한 위임사항) <u>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방호과소관 사무 제1호내지 제48호의 위임은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u></p>
부 칙	부 칙
<p>①생략 ②생략 ③(소방과 소관사무의 수임기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2조 별표 제1호내지 제52호의 소방업무 수임기관은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은 관할지역의 <u>군수가 된다.</u></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p>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과 소관)

□ 개정사유

1. 가. 약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리
나. 일련번호 재정비
다. 민원인 편의도모
2. 의료기사법·의료법에 따라 개정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91.12.14)에 따라 개정

□ 주요골자

1. 가. 약종상·한약종상의 명칭변경(약업사, 한약업사)
나. 제조업자 영업소 등록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2.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의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3. 공중보건의 직장이탈금지과 복무감독권한이 법률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구로 명시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지정업무를 시·군으로 위임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1. 약사법(1971. 1.31. 법률 제2279호)부칙 제2항 제3항 및 동규칙 제31조·제45조
2. 의료기사법 제10조
3.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91.12.14. 법률 제4430호 전부개정)제8조 및 제14조
4.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 첨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령
보건과	29호	약종상·한약종 상·판매약상의 허가대상비치및 허가증 교부	보사부 훈령 규칙	보건과	29호	약업사·한약업 사·매약상의 영업허가증 조	약사업 시행규 칙제29 조
	30-2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약사법 시행규 칙제24 조		31호	약사법 시행규 칙제24 조
	31호	의약품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증갱신	동규칙 제50조		32호	동규칙 제50조
	33- 35호	(신 설)			33호	제조업자의 영업 소 등록	동규칙 제31조
	34호				34호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동규칙 제45조
	35호				35호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의료기 사법 제10조
	36호 - 39호	(삭 제)			36호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도매업자 관리 자에 대한 다음 사무) 가. 도매업자 또 는 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사항 변경	향정신 성의 약품관 리법제 8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과				보건과		나. 지정서의 교부	동법 제9조 동행규칙 제9조
						다.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동규칙 제23조
						라. 지정판매업자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동법 제35조
					37호	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대상자와 판매승인	동법 제18조
					38호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동법 제27조, 동시행규칙 제27호
					39호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삭제)	동법 제28조
	58호	공중보건의 복무지 감독 및 이탈허가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3조		58호	의약품 판매업의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약사법 제69조
	62호	(신설)			62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5조 및 제16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오물청소법, 환경보전법등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신고 및 처리신고 대상기관이 시·도지사 에서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업무 삭제
- 전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던 특별청소구역의 지정업무 삭제
-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위임 (도지사 → 시장·군수·출장소장)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 및 제3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첨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대비표

분야별	현행	개정안
환경보호 담당관실	1.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재생이용변경) 신고 2. 산업폐기물의 처리신고 3. 특별청소구역의 지정 4. 소음규제 지구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삭 제 " " " " "
환경 관리과	신 설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환경 지도과	신 설	1.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생과 소관)

□ 개정이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별표】의 위생과 소관사항중

- 법령(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은 삭제하고
- 위임명시 누락된 사항은 신설하며
- 법령개정등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 수정보완

□ 주요골자

- 법령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 삭제 : 24건(식품수거검사등)
- 누락된 사항 신설 : 2건(조리사 면허취소등)
- 문구 수정보완 : 3건(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등)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 첨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위임사무								(별표) 권한위임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생과	1	○ 식품수거검사	식품위생법제 <u>13조</u>			삭 제	식품위생법제 17조											
	2	○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동법 제28조				삭 제	동법 제28조 제4항											
	3	○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에 관 한 사항	동법 제28조				삭 제	동법시행령제 53조											
	4	○ 부정·불량식품 압류폐기처분	동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 <u>47조</u>				삭 제	동법 제56조											
	5	○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 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경 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 에서 교부하고 '83. 7이후 교육 기관 이수후 면 허증을 발급받 은 자는 최초교 부 당시의 주소 지의 시군구에 서 재교부함)		1	○		동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 4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 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경 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 에서 교부하고 '83. 7이후 교육 기관 이수후 면 허증을 발급받 은 자는 최초교 부 당시의 주소 지의 시군구에 서 재교부함)	공중위생법 제9조 동법시 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2	○ (.....)	
7	○ 이.미용사 건강 <u>진단 결과에 의</u> <u>한 취업정지</u>	공중위생법 제6조		삭 제	공중위생법 제23조
8	○ 이.미용업소의 <u>개설신고</u>	동법 제8조		삭 제	동법제4조
9	○ 동 개설 신고필 <u>증의 교부</u>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삭 제	동법제6조
10	○ 동 영업의 휴.폐 <u>업신고</u>	동법 제8조		삭 제	동법제6조
11	○ 동 영업의 신고 <u>사항 변경 및</u> <u>신고필증교부</u>	동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삭 제	동법제7조
12	○ 동 영업소에 대 <u>한 검사 및 개</u> <u>수명령</u>	동법제21조		삭 제	동법제2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3	○ 동 영업소의 보 조원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취 업	동법 제13조		삭 제	동법제23조
14	○ 동 영업소의 폐 쇄명령	동법 제25조		삭 제	동법제23조
15	○ 목욕장업의 시 설등급 사정	동법 제3조		삭 제	동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16	○ 동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동법 제4조		삭 제	동법제4조
17	○ 동 영업의 휴 업.재개업.폐업 신고	동법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삭 제	동법제7조
18	○ 동 시설의 검 사.보고 및 개 수명령	동법제 20 조 및 제21조		삭 제	동 법 제 20 조 및 제23조
19	○ 동 영업의 허가 취소 및 정지	동법 제23조		삭 제	동법 제23조
20	○ 숙박업의 등급 사정	동법 제3조		삭 제	동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21	○ 동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동법 제4조		삭 제	동법 제4조
22	○ 동 시설의 검 사.보고 및 개 수명령	동법 제20조 및 제21조		삭 제	동 법 제 20 조 및 제2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u>23</u>	○ 숙박업의 허가 취소 및 정지	<u>동법 제23조</u>				<u>동법제23조</u>
	<u>24</u>	○ 동 영업의 휴 업.재개업.폐업 신고	<u>동법 제4조</u> <u>및 동법시행</u> <u>규칙 제13조</u>			삭 제	<u>동법제7조</u>
	<u>25</u>	○ 식품등으로 기 인된 사체의 해 부	<u>식품위생법</u> <u>제68조</u>	3	○
	<u>26</u>	○ 식품위생관리인 의 신고	<u>동법시행령</u> <u>제8조</u>			삭 제	<u>동법시행규칙</u> <u>제39조</u>
	<u>27</u>	○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u>동법시행령</u> <u>제5조</u>			삭 제	<u>동법시행령</u> <u>제5조</u>
	<u>28</u>	○ 이.미용사의 업 무정지	<u>공중위생법</u> <u>제9조</u>	4	○ 이.미용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 지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 와 현주소지 시 도가 다른 경우 의 면허취소와 업무정지는 최 초교부한 도에 서 관장함)	<u>공중위생법</u> <u>제23조제2항</u>	
	<u>29</u>	○ 병.통조림 영업 및 어육연제품 제조업 관리중 가. 제조업 및 변경 허가	<u>식품위생법제</u> <u>22조 제1항</u> <u>및 제2항</u>	5	○ 병.통조림 제조 업 관리중 가. 영업허가 및 변 경허가 <u>동법시행령</u> <u>제53조</u>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나. 품목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동법 제22조 제3항			나.
		다. 휴업.재개업.폐 업 및 변경신고	동법 제22조 제4항			다.
		라. 조건부 영업 허가	동법 제23조			라.
		마. 영업의 승계	동법 제25조 제3항			마.
		바. 품질관리 및 보고	동법 제29조			바.
		사. 시정명령	동법 제55조			사.
		아. 폐기처분중	동법 제56조			아.
		자. 시설의 개수 명령등	동법 제57조			자.
		차. 허가의 취소등	동법 제58조			차.
		카. 품목제조허가의 취소등	동법 제58조			카.
		타. 폐쇄조치 등	동법 제62조			타.
		파. 청문	동법 제64조			파.
		하. 과징금 처분	동법 제65조			하.
		거.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 제78조			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	○ 조리사 면허 취소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 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경 우는 최초교부 한 시도에서 면 허취소함)	동법 제63조
			7	○ 조리사면허증의 반납 (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 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 우의 면허최소 자는 최초 교부 한 시도에 면허 증 반납)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수면어업과 소관)

□ 개정사유

1. 수산업법 및 어선법개정에 따른 정비
2. 수산시설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위임된 규정 정비
3. 업무의 일원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4. 일련번호 재정비

□ 주요골자

1. 수산업법 규정을 준용하여 위임된 어선 건조·개조·발주허가를 어선법에 의거 위임
2. 어선법 시행규칙개정('87. 6.20)시 폐지된 업무 삭제 영영서 교부
3. 수산시설사업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위임사항 삭제
4. 재위임사항의 정비
 - 항해의 신고(어업법 시행령 제4조), 임시 항해의 신고(어선법 시행령 제30조)
5. 본도의 업무와 관계없는 조항 정비
 - 수산종묘생산(육상)허가 (수산업법 제41조)
6. 수산시설의 관리자 변경 및 처분제한 승인(수산시설 관리규정 제7조)은 위임사항이므로 충청북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이관
7. 어선행정업무중 미위임된 업무의 위임으로 업무의 일원화 도모
 - 청문에 관한 권한(어선법 제29조의 2)
 - 선박국적증서등의 무료고시(어선법시행규칙 제34조)
8. 일련번호의 재정비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어선법 제5조, 제29조의 2
- 어선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49조
-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
- 수산업법 제41조
 - ※ 수산업법 제12조는 제41조로 개정
- 수산시설 관리규정 제7조

□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내수면 어업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허가어업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대한 어선건조개조의 발주허가 	어선법 제5조	내수면 어업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개조의 발주허가 	어선법 제5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어선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7	(현행과 같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서의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33조		8	(삭 제) *내수면과 관계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별 조합의 감독상 필요한 자료요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22조			(현행과 같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 사업자 선정 	수산시설사업 집행지침			(삭 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 사업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			(삭 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사업 준공처리 	"			(삭 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개량사업자 선정 	"			(삭 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개량사업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			(삭 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개량사업 준공처리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7	• 수산시설의 사 후관리 및 지도 감독	수산시설관리 규정 제5조		9	(현행과 같음)	
	18	• 수산시설의 관리 <u>자 변경 승인</u>	수산시설관리 규정제7조		10	• 수산시설의 <u>목적</u> <u>의 사용, 양도,</u> <u>교환, 대여, 담보</u> <u>제공 및 주요시</u> <u>설변경 승인</u>	수산시설관리 규정제7조
	19	• 수산동.식물, 채 포금지 해제허가 (양식어업, 제1종 공동어업용 종 묘)	수산자원보호 령제15조 제 1항 제1호		11	(현행과 같음)	
	20	• 어선현장확인업 무	어선법 제8조		12	(현행과 같음)	
	21	• 항해의 신고	동법시행령 제4조		13	(현행과 같음)	
	22	• 임시항해의 신고	동법시행령 제30조		14	(삭 제) *내수면과 관계없 음.	
	23	• 수산종묘생산업 (육상)허가	수 산 업 법 제 12조, 제86조			(삭 제) *10호에 포함	
	24	• 수산시설물의 처 분제한 및 승인 (단, 무전기는 5W이하)	수산시설관리 규정 제7조				
		(신 설)			15	• 청문에 관한 권 한	어선법제29조 의2
		(신 설)			16	• 선박국적고시등 의 무효고시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 소관)

□ 제·개정(폐지)이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

□ 주요골자

-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해제를 천연보호림등을 삽입하여 보호수도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관성 유지
-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설정 및 해제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설정관리로 야생조수 보호 번식 기여
- 조수보호원의 자격 및 임명·해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적임자를 확대 임명 및 관리로 야생조수보호 및 애호심 고취.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산림법 제69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 동시행령 제5조, 제7조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5조 동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3조

□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20. 천연보호림등에 관한 사무</p> <p>가. 천연보호림등의 관리</p> <p>나. 천연보호림내의 행위제한</p> <p>다.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해제</p>	<p>20.</p> <p>가.</p> <p>나.</p> <p>다. 등의</p>
<p><u>(신설)</u></p>	<p>24. 조수보호구 설정</p> <p>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의 설정</p> <p>나.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의 설정 또는 해제의 고시</p> <p>다. 조수보호구 안에서의 이용 개발 행위</p> <p>라. 손실보상</p>
<p><u>(신설)</u></p>	<p>24. 조수보호원의 자격 및 임명.해임</p> <p>가. 조수보호원의 임명</p> <p>나. 명예 조수보호원 위촉</p> <p>다. 조수보호원증 및 명예 조수보호원증 발급과 발급대 장 비치</p> <p>라.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보 호원의 해임 및 해촉</p>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개정(폐지)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업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법규와 위임조례의 근거법령을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기계식주차장 인정 법조문 정리

- 주차장법 제12조 → 제6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제6조 제2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련 번호	사 무 명	일련 번호	사 무 명
3	기계식주차장 인정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조 제3항	3	현행과 같음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6조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소관)

□ 제·개정(폐지)이유

- 토지거래허가·신고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국가등의 토지거래협의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사후관리등 업무의 일관성 결여.
- 국가등의 토지거래계약협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현지확인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함.

□ 주요골자

-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계약협의 업무에 대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9 제1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의 2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9조

□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 시 계획과	(신설)			도 시 계획과	7	○ 국가등이 행하는 토 지등의 거 래계약 협 의에 관한 사항	국 토 이 용 관리법 제 21 조 의 9 제1항 동 법 시 행 령제29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치수과 소관)

개정이유

- 하천편입 용지보상을 위한 청구 및 편입용지조서의 작성과 그에 필요한 지적공부 관리등을 시장, 군수가 하고 있으며
- 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 및 수령에 이르기 까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조례개정.

주요골자

- 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권한 위임사무로 개정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하천법 제74조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신·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권한 위임사무				(별표) 권한 위임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치수과		(신 설)			78	하천편입 용지보상 (매수및 소유권이 전)	하천법 제74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방호과소관)

개정사유

- '91.12.14. 소방법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 개정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를정비코자함.

주요골자

- '91.12.14. 소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 일련번호 재정비
- 법개정에 따른 존치불요항목삭제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1부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개				
행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소 방 과	1	소방설비 면허변경	소방법제42 조의5동법시 행규칙제18 조	방 호 과		삭 제		
	2	소방설비 기사신고	동법제42조 의14제1항동 법시행령제 28조의4동법 시행규칙제 21조				삭 제	
	3	화재의예방 조치명령권	소방법제4조			1	현행과동일	현행과동일
	4	소방대상물 검사권	동법제5조			2	"	현행과동일
	5	소방활동에 필요한조사 권	동법시행규 칙제1조제2 항, 제3항			3	현행과동일	소방법제3조 소방법제81 조내지제85 조
	6	소방대상물 의개수명령 권	동법제7조			4	"	동법제3조, 제6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소 방 과	7	건축허가등의 동의권	동법제9조	방 호 과	5	현행과동일	동 법 제 3조, 제8조
	8	방화관리자의 선임또는 해임신고	동 법 제10 조, 동법시 행규칙제5조		6	"	동 법 제 3조, 제9조
	9	공동방화관 리대상지정 및협의사항 신고	동법제11조		7	현행과동일	동 법 제 3조, 제10조
	10	소방관계자 의교육미필 자에대한해 임명령및해 임권고권	동 법 제 70 조 의 9제2항		8	"	동 법 제 3조 제105조
	11조	방화관리자 등의실무교 육	동 법 시 행 규 칙 제 73 조		삭	제	
	12	방염후처리 물품에대한 방염성능의 검사권	동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삭	제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	아	일	사	근	분	일	사	근	법
야	별	련	무	거	야	련	무	거	령
별	번호	번호	명	법	별	번호	명	법	령
소 방 과	13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승인권	동법제14조, 동법시행규 칙제43조의2	방 호 과	9	현행과동일	동법제3조, 제15조	
	14		위험물제조 소등의설치 허가권	소방법제15 조, 동법시 행령제36조, 제37조		10	현행과동일	동법제3조, 제16조, 동 법시행령제 62조	
	15		위험물취급 주임또는위 험물취급자 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동법제18조		11	현행과동일	동법제3조, 제20조	
	16		예방규정의 인가권	동법제20조, 동법시행규 칙제59조		12	"	동법제3조, 제22조, 동 행시행령제 62조	
	17		위험물제조 소등의감독 권	동법제22조		13	"	동법제3조, 제24조, 동 법시행령제 62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소 방 과	18	위험물제조 소동의허가 취소, 사용 정지명령권	동법제23조		14	"	동법제3조, 제25조, 동법 시행규칙제 62조		
	19	무허가위험 물시설등에 대한조치명 령권	동법제26조		15	"	소방법제3 조, 제28조		
	20	위험물제조 소동의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관한 사항	동법제37조 의2				삭 제		
	21	위험물제조 소동의양수 신고	동법제17조, 동법시행령 제38조		16	위험물제조 소동의승계	소방법제3 조, 제19조 동 법시행령제 62조		
	22	자체소방조 직의지도감 독권	동법시행규 칙제60조		17	현행과동일	소방법제3 조, 동법시 행령제23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소 방 과	23	소방시설설 치유지에관 한명령권	동법제 29조 제2항		18	"	소방법제 3 조, 제30조		
	24	소방시설기 준적용의특 례에관한권 한	동법제30조		19	"	소방법제 3 조, 제31조		
	25	소방설비공 사의시공신 고및완공검 사권	동법제 42조 의12, 동법시 행규칙제 20 조및제23조		20	"	소방법제3조, 제62조		
	26	화재위험경 보발령권	동법제 44조 제1항		21	"	소방법제 3 조, 제67조		
	27	화재위험경 보발령시불 의사용제한 권	동법제 44조 제2항	방 호 과	22	현행과동일	소방법제 3 조, 제67조 제2항		
	28	화기취급의 금지, 제한 권	동법제45조		23	"	소방법제 3 조, 제68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소 방 과	29	방화경계지구에대한소방상조치명령권	동법제46조 제2항	방 호 과	24	현행과동일	소방법제3조, 제69조 제2항		
	30	화재경계지구설정권	동법제52조		25	"	동법제3조, 제75조		
	31	방화경계구역출입금지제한권	동법시행규칙제45조		26	"	동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71조		
	32	소방응원요청, 지휘권	동법제53조, 동법시행령 제31조		27	"	동법제3조, 제76조		
	33	소화종사명령권	동법제54조		28	"	동법제3조, 제77조		
34	소방대상물 등에대한강제처분권	동법제55조	29	"	동법제3조, 제79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소 방 과	35	화재로 인한 피난명령권	동법제56조	방 호 과	30	현행과동일	동 법 제 3조, 제79조		
	36	화재현장의 급수유지의 긴급조치권	동법제57조		31	"	동 법 제 3조, 제80조		
	37	소 방 용 수 시 설의지정권	동 법 제 42조, 동 법 시 행 규 칙제42조		32	"	동 법 제 3조, 제43조		
	38	화재원인 과 피해 재산 조 산권	동법제58조		33	"	동 법 제 3조, 제81조		
	39	강제조사권	동법제59조		34	"	동 법 제 3조, 제82조		
	40	경찰에 의 하 여 체포 된 자 에 대한 조치 권	동법제60조		35	"	동 법 제 3조, 제83조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소 방 과	41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 력	동법제61조, 62조	방 호 과	36	현행과동일	동 법 제 3조, 제85조			
	42	청원소방원 의 배치결정 권	동법제68조 의2, 동법시 행령제42조		37	"		동 법 제 3조, 제92조 동법 시행령제44 조		
	43	청원소방원 지도, 감독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제 45조의3		38	"		동 법 제 3 조 동 법 시 행 령 제48조		
	44	청원소방원 직무교육실 시권	동법시행규 칙제45조의3		39	"		동 법 제 3조, 동 법 시 행 규 칙제74조		
	45	청원소방원 의운영관리	동법시행규 칙제45조의6		40	"		동 법 제 3조, 동 법 시 행 규 칙제77조		
	46	구급대의편 성및운영권	동법제70조 의10		41	"		동 법 제 3조, 제93조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소 방 과	47	구급대원의 임명권	동법시행령 제48조제2항	방호과	42	현행과동일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9조		
	48	구조대의편 성운영권	동법제70조 의7	"	43	"	동법제3조, 제94조		
	49	구조대원의 임명권	동법시행령 제49조2제2 항	"	44	"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50	구조활동의 지원요청권	동법시행령 제49조의3	"	45	"	동법제3조, 제93조		
	51	청 문 권	동법제70조 의12	"	46	"	동법제3조, 제106조		
	52	과태료부과 징수권	동법제78조 제2항 동법 시행령제64 조	"	47	"	동법제3조, 제119조 동 법시행령제 64조		
	신	설		"	48	소방시설자 체점검보고	동법제3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제 30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축산과소관)

개정사유

- '87.12. 4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됨에따라 도지사권한이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개정되어 위임대상 사무에서 제외하고 불합
리한 사항을 수정보완코자함

주요골자

- 시장, 군수권한 사항으로 개정된 위임대상사무삭제
- 일련번호재정비
- 자구수정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 산 과	1	종축의검사	축산법제4조			삭	제		
	2	종축검사의 시기및 장소 결정	동규칙제3조 제2항			"			
	3	동 공고	상 동			"			
	4	종축합격증 명서교부	동법제6조			"			
	5	종축증명교 부대장비치	동법시행규 칙제7조			"			
	6	종부의제한 조치	동법제7조			"			
	7	보호종축의 지정	동법제8조제 1항			"			
	8	후보종축의 지정	동법제8조제 2항			"			
	9	동 후보종축 증명서교부	동법제8조제 3항			"			
	10	불량모축의 거세명령	동법제11조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축 산 과	11	동모축의거 세기술증명 서교부	동법시행규 칙제10조제2 항			삭	제
	12	동거세로인 한폐사가축 에 대한 보상 금지급	동법제 11 조 제 2 항			"	
	13	종계업 등록 및 취소	동법제 13 조 제 1 항 및 제 14 조 제 1 항		1	존	치 현행과 동일
	14	부화업 허가 및 취소	동법제 13 조 제 1 항 및 제 14 조 제 7 항		2	"	"
	15	종계업 및 부 화업의 감독	동법제 15 조		3	"	"
	16	대부종축의 전대관리위 탁의 승인	동법시행규 칙제 14 조 제 2 항		4	"	"
	17	가금등의도 살처리장시 설의 검사 (단 시장, 군수가 운영 하는 것은 제 외)	가금등의의 뢰검사규칙 제 3 조 제 2 항		5	"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 야 별	일련 번호
축 산 과	18	동물약품취 급정지처분	약사법제 69 조	6	6	동물용의약 품등취급 행 정처분	약사법제 69 조 동물용의 약품등취급 규칙제 31조	축 산 과	6
	19	동물병원개 설신고및신 고사항변경 신고	수의사법제 17조	7	7	존 치	현행과동일	축 산 과	7
	20	동 휴 업 및 폐 업신고	동법제 18조	8	8	"	"	축 산 과	8
	21	수의사검진 검안부의검 사	동법제 32조	9	9	"	"	축 산 과	9
	22	공수의지도 감독	동법제 21조	10	10	"	"	축 산 과	10
	23	종모우의종 부정지처분 과지정및취 소	축산법시행 규칙제 8조제 10조	11	11	종모우의수 정제한질환 및거세가축 의종류·지 역고시	"	축 산 과	11
	24	종부대부기 간연장및대 부종축의반 납명령	동규칙제 13 조	12	12	종축대여기 간연장및대 여종축의반 납명령	"	축 산 과	12
	25	가축의경리 와이동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 8 조	14	14	존 치	"	축 산 과	14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축 산 과	26	카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또는 제한명령	동법제18조		14	존 치	현행과동일
	27	가축방역관 임명	동법제3조		15	"	"
	28	가축의 사체 소각또는 매몰발굴의 중지	동법제15조		16	"	"
	29	전염병이환 축의도살처분명령	동법제10조		17	"	"
	30	광견병이환 축의조치	동법제102조 제3항		18	"	"
	31	검사, 주사, 약육또는 투약의 실시	동법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19	"	"
	32	초지조성의 전용허가	초지법제23조 제1항 제2		20	"	"
	33	축산업의 등록	축산법제13조의2 제1항		21	"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 산 과	34	축산업영업 의양도·임 대등록사항 변경및폐업 ·휴업·재 개신고수리	동법제13조 의2제5항및 제6항		22	존 치	현행과동일		
	35	종축업의 등 록	동법제13조 제1항		23	"	"		
	36	종축업 영업 의양도·임 대등록사항 변경및폐업 ·휴업·제 개신고	동법제13조 제3항및제5 항		24	"	"		
	37	축산업자및 종축업자에 대한다음의 사무 가.사육가 축감축명령 나.초과사 육부과금납 부명령 다.감축명 령미이행에 따른등록취 소 라.지도감 독	동법제14조 및제15조		25	"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38	공수의에대 한업무위촉	수의사법제 21조		26	존 치	현행과동일	
	39	부정축산물 검사	축산물위생 처리법제16 조		27	" "	"	
	40	사료판매업 신고및변경 신고	사료관리법 제10조		28	" "	"	
	41	사료검사신 청	사료관리법 제15조		29	" "	"	
	42	동물약품도 매상허가	동물약품취 급등급규칙제 10조		30	동물용의약 품도매상허 가	동물용의약 품등급규 칙제10조	
	43	동물약품도 매상허가사 항등의변경	동규칙제12 조		31	동물용의약 품등허가사 항변경	동규칙제14 조	
	44	동물약품제 조관리자의 변경	동규칙제15 조		32	관리약사변 경	동규칙제10 조전항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45	동물약사감 시원임명	동규칙제28 조		33	동물약사감 시원임명	동규칙제29 조전항		
	46	동물약사허 가등록사항 보고	동규칙제35 조		34	동물용의약 품등의허가 등록사항보 고	동규칙제37 조		
	47	행정처분	동규칙제31 조		35	존	치	현행과동일	
	48	축사내외부 소독실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조		36	"		"	
	49	가축집합시 설에대한설 비명령	동법제7조		37	"		"	
50	박살처분보 상금지급	동법제34조 및동법시행 령제3조		38	살처분보상 금지급		동법제34조 및동법시행 령제3조		